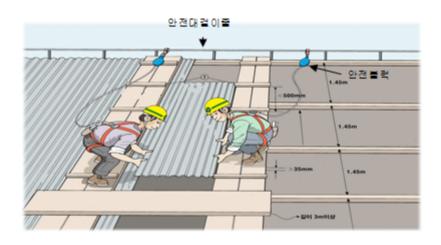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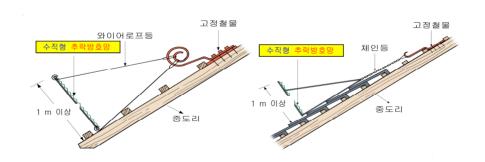
C - 59 - 2022



<그림 3> 지붕작업발판 설치(예)

(마) "지붕보호벽"이라 함은 <그림 4>와 같이 지붕경사가 45° 이상인 경우 지붕바닥에서 높이 1 m 이상의 수직형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7.5 KN(765 kg) 이상의 충격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보호벽을 말한다.



<그림 4> 지붕보호벽 설치(예)

(바) "채광창(선라이트) 안전덮개"란 채광창 위에 설치되어, 작업자가 지붕위에서 이 동 또는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파손되어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.